

「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2. 30(금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3. 8(목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3. 9(금)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)

-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(10.30시행)으로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,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- 위원회 기능 확대 (안 제3조)
 -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과 업무취급승인 조항 신설
- 심사기준 근거 신설 (안 제3조의2)
 -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및 처분 기준이 있지만 그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,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
-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(안 제8조)
 -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
-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(안 제11조)
-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정비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2011년 7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내용을 반영하고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위원회의 기능 중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승인을 할 수 있는 조항과
 -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